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19호

「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7월 2일

고 흥 군 의 회

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공무원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안 제7조제2항)
-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(안 제13조의2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7. 3. ~ 2024. 7. 9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전문위원과 공무원)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